긴급입찰사유서

□ 사업명 :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(설비)

□ 긴급입찰 관련법령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5. 1.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**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**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□ 긴급입찰사유 및 법적 근거

○ 긴급입찰 사유

- **연계 국가사업의 일정상 제약 및 사업 집행의 긴급성** : 본 공사는 보건복지부 「202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」과 연계된 핵심 사업으로,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집행 및 집행률 목표 달성이 필수적입니다.
- **착공 시기 단축을 통한 연내 기성금 집행 가능성 제고** : 본 공사는 전체 공기(120일) 특성상 최종 준공은 2027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나, 입찰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최단 기간 내 완료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것이 시급합니다. 긴급입찰을 통해 착공 시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, 연내에 선금 지급 및 초기 공정에 대한 1차 기성금 집행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당해 연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.
- **일반 입찰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** : 일반입찰(공고기간 7일 이상)로 진행할 경우, 계약 체결 및 착공 시점이 지연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며,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- 이에 따라 연내 정상 준공을 추진하고자 긴급입찰을 실시합니다.

○ 법적근거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제4항제2호

상기의 이유로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2026.10.14.

부 서 : 총무팀 직급 : 담당 성명 : 이준혁

부 서 : 총무팀 직급 : 팀장 성명 : 현은정